

2025년 중소기업 세무교육 (우리회계법인 송영선 회계사)

2025.09.



소개

[보조금 검증의 전문가]

공인회계사, 송영선

지난 10여 년 간, 수천 건의 보조금 사업 검증과 평가를 수행해 왔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보조금 검증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범부처통합 평가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환경부 등
우리회계법인 출신, 보조금 검증 전문 회계사 그룹 "TEAM 송영선" 대표 전문 공인회계사 총 7인



Homepage(질의응답, 문의, 상담)

www.보조금.com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CONTENTS

2025년 중소기업 세무교육

I 법인세 개요

1-1. 법인세 개요	01
-------------	----

II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1. 중소기업 주요 세무특례	08
2-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	11
2-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31
2-4.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24)	37
2-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29의8)	42
2-6. 특례적용 시 유의사항	58

III 기타 주요 세무유의사항

3-1. 불성실 세금실고 시 불이익	66
3-2. 업무무관 가지금금과 세금	67
3-3.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69
3-4. 주금(자본금)의 가장납입과 세무	70
3-5. 분식결산과 세무	71
3-6.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72

CONTENTS

2025년 중소기업 세무교육

I 법인세 개요

1-1. 법인세 개요	01
-------------	----

II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1. 중소기업 주요 세무특례	08
2-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	11
2-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31
2-4.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24)	37
2-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29의8)	42
2-6. 특례적용 시 유의사항	58

III 기타 주요 세무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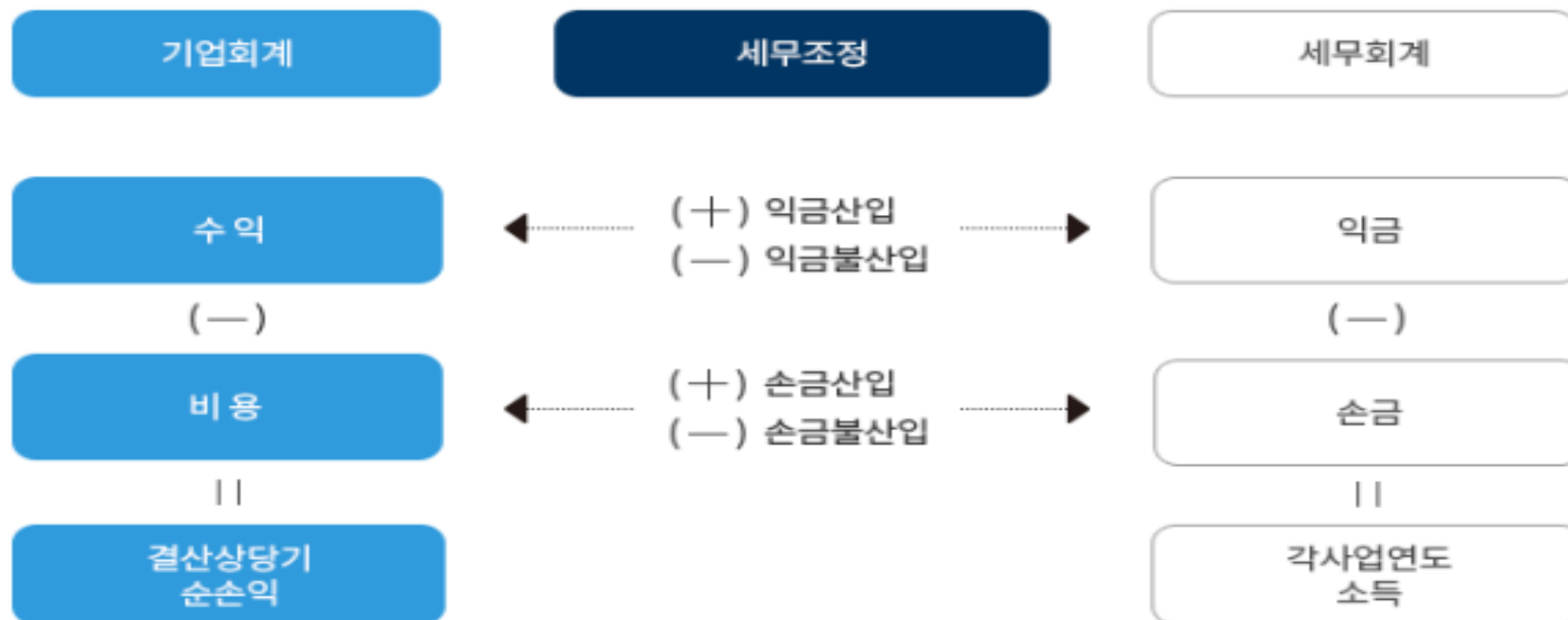
3-1. 불성실 세금실고 시 불이익	66
3-2. 업무무관 가지금금과 세금	67
3-3.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69
3-4. 주금(자본금)의 가장납입과 세무	70
3-5. 분식결산과 세무	71
3-6.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72

1. 법인세 개요

1-1. 법인세 개요

가. 세무조정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1. 법인세 개요

1-1. 법인세 개요

나. 법인세 계산 흐름도

구분	내용
당기순이익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세무조정〉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으로 조정하는 과정	• 결산조정 : 결산에 반영되어야 인정 예)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일정한 대손금, 자산 평가손실 등 • 신고조정 : 결산반영 없이 신고서 계상 가능 예)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손익귀속시기 차이 등
(+) 익금산입 익금의 범위 :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	• 사업수입금액 : 장기할부판매,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조정 • 준비금·충당금 환입액 : 사유 발생시 미사용 잔액 등 환입 •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 부동산임대업 & 차입금이 자기자본 2배 초과 법인 대상 • 가지급금 인정이자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 대여시 이자상당액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 관련 지급이자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와 상각률 등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 한도액(①+②+③+④) ①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당해 사업연도 월수/12 ② 일반수입금액×적용률(0.3%, 0.2%, 0.03%)+특수관계자 거래 수입금액×적용률×10% ③ min[문화기업업무추진비, (①+②)×20%] ④ min[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 (①+②)×10%]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1. 법인세 개요

1-1. 법인세 개요

나. 법인세 계산 흐름도

구분	내용
(-) 익금불산입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합병·분할차익 등 • 자산의 평가이익 : 보험업법 등 법률에 의한 평가이익 제외 • 수입배당금 : 이중과세 방지 -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100%, 80%, 30%) •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
(-) 손금산입 손금의 범위 :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 법인세법상 준비금 :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 부담금 : 장래에 지급할 퇴직급여를 대비하여 비용 설정 • 대손충당금 : 채권의 세법상 장부가액 × max(1%, 대손실적률) •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차가감 소득금액	(= 당기순손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 및 이월액 손금산입	• 기부금 귀속시기 :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어음·실제 결제된 날) • 현물기부금 : 특례기부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한 일반기부금→장부가액,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반기부금, 비지정기부금 → [max(시가, 장부가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특례기부금 50%, 일반기부금 10%, 비지정기부금 손금X) * 사회적기업이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20% 한도 적용 •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액 : 특례·일반기부금 10년*간 이월공제 * '19. 1. 1. 이후 신고분 및 '13.1.1. 이후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대상

1. 법인세 개요

1-1. 법인세 개요

나. 법인세 계산 흐름도

구분	내용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차가감 소득금액 ± 기부금 한도초과 및 이월액 손금산입)
(-) 이월결손금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19.12.31.이전 개시 사업연도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 중 다음 사유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라 소급공제 받은 결손금 -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이월결손금으로 이미 공제된 금액 -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총당된 이월결손금 등 • 공제한도 : 중소기업 등은 당해 소득금액의 100%, 그 이외 법인은 80%
(-) 비과세소득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 소득공제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그 배당금액 • 국민주택 임대소득 공제 등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선박표준이익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①+②) ① 해운소득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 1천톤 이하 14원, 1천톤 초과 1만톤 이하 11원, 1만톤 초과 2만5천톤 이하 7원, 2만5천톤 초과 4원 ② 비해운소득 : 법제§13부터 §54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법인세 개요

1-1. 법인세 개요

나. 법인세 계산 흐름도

구분	내용
(×) 세율	• <u>과세표준 2억 이하 : 9% / 2억 초과 200억 이하 19%</u>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 3,000억 초과 24%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등기 10%(주택 20%), 미등기 40%)]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미환류소득(투자금액포함방식, 투자금액제외방식)×20%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공제·감면세액	•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공제와 손금산입 방법 중 선택 적용) • 공제한도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법인세 과세표준) - 재해손실세액공제 :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된 경우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관련 세액공제 :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의한 세액환급과 달리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액에서 공제(과다 납부한 세액의 20%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공제) - <u>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u> - <u>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소기업(10%, 20%, 30%), 중기업(5%, 10%, 15%)</u>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max(당기비용×0~25%, 전년대비 증가 비용 ×25~50%)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min(성실신고확인 비용×60%, 150만원)

1. 법인세 개요

1-1. 법인세 개요

나. 법인세 계산 흐름도

구분	내용
※ 최저한세의 계산	• 중소기업 : 과세표준(유예기간 포함) 7% • 일반기업 - 과세표준(유예기간 이후 1~3년차) 8% - 과세표준(유예기간 이후 4~5년차) 9% -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12% -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17%
(+) 가산세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등 • 법인세법상 가산세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주주등의 명세서 제출불성실·증명서류 수취 불성실·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가 감 계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기한내 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등(가산세 제외) • 신고납부전 가산세액 :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준비금의 환입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등
차감납부할 세액	(= 가감계 - 기납부세액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CONTENTS

2025년 중소기업 세무교육

I 법인세 개요

1-1. 법인세 개요	01
-------------	----

II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1. 중소기업 주요 세무특례	08
2-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	11
2-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31
2-4.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24)	37
2-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29의8)	42
2-6. 특례적용 시 유의사항	58

III 기타 주요 세무유의사항

3-1. 불성실 세금실고 시 불이익	66
3-2.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	67
3-3.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69
3-4. 주금(자본금)의 가장납입과 세무	70
3-5. 분식결산과 세무	71
3-6.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72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1. 중소기업 주요 세무 특례

가. 지원내용

구분	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창업후(벤처기업 확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75, 100)%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 * 2005.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분 부터 본점기준 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 (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 업장을 수도권으로 보아 감면비율 적용)	소기업	수도권	제조업 등	20	
			도소매,의료업	10	
			통관대리 등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30	
			도소매,의료업	10	
			통관대리 등	15	
		중기업	수도권 외	제조업 등	15
				도소매,의료업	5
				통관대리 등	7.5
	* (한도) 기본한도 1억원-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1인당 × 5백만원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1. 중소기업 주요 세무 특례 가. 지원내용

구분	내용			
통합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법§24)	시설투자	당기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1)	1	5(7)	10(12)
	신성장·원천기술	3	6(8)	12(14)
	국가전략기술(*2)	15	15	25
증가분(%)				
3(10)				
4(10)				
(*1) 공제대상자산 : ①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제외) ② 일부 유형자산(①제외)과 무형자산 (*2) '21.7.1. 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25.1.1.이후 최초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는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단, 공제율은 '23년 공제율과 상이)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1. 중소기업 주요 세무 특례

가. 지원내용

구분	내용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29의8)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 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 여 적용 가능 (예시 : 통합고용 &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	■ 기본공제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아래 금액		
	구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만원	950만원
	청년정규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1,450만원	1,550만원
	•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3년 적용		
	■ 추가공제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구분	중소기업		
정규직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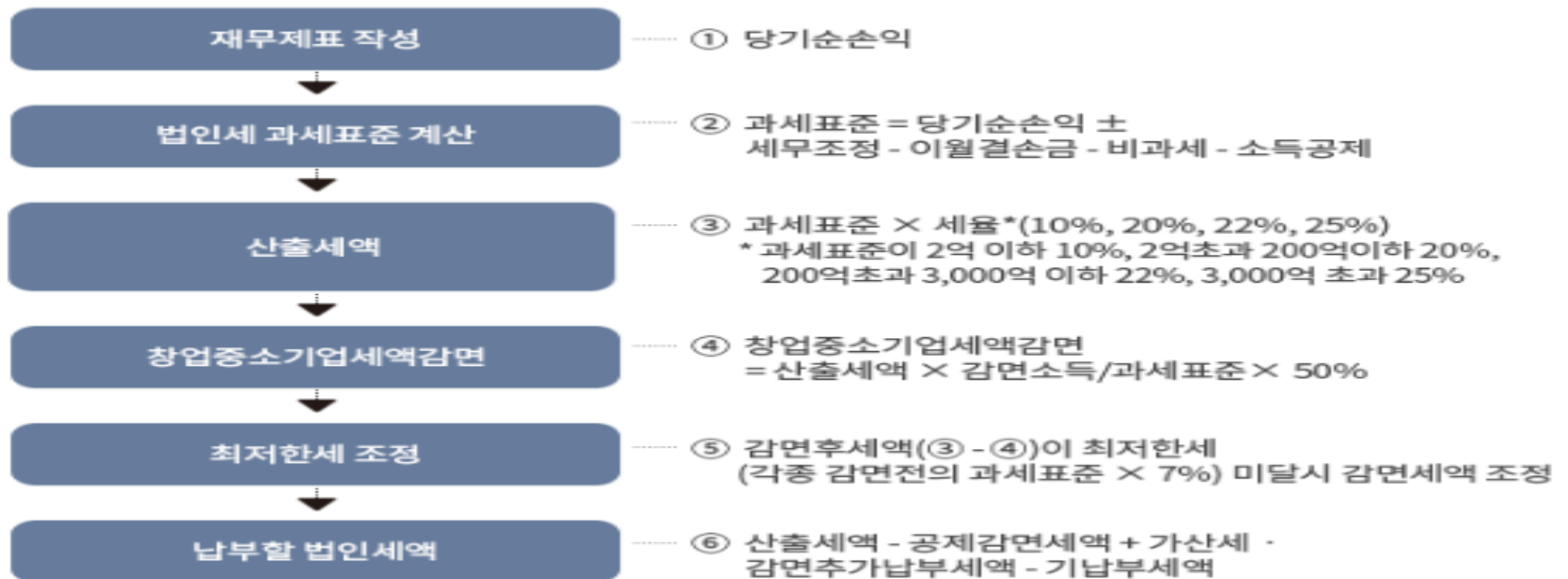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가. 개요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10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75 · 10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나. 감면대상 법인

-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특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특령 §5⑪에 따른 중소기업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나. 감면대상 법인

(*) 감면대상 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다. 법인세 감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를 매년 감면합니다.

$$\text{감면세액} = \text{법인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소득}}{\text{과세표준}} \times 50(70 \cdot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특령 §525)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사업자)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사업자) 확인(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북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 내강리 등, 동 이름 지면상 생략하였음)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울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다. 법인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보육 센터사업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¹⁾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³⁾	그 외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³⁾	그 외			
5년 100% ²⁾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	5년 50%	5년 50%	5년 50%

- 1) (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동일 것
- 2) '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 3)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 S/W개발업 등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에 열거된 업종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외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다. 법인세 감면

1. 창업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비율은?

감면이 100%인 해당기업

- | | |
|---|---------------------------|
| 1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 청년창업인 경우 |
| 2 | 위 지역에서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감면이 50%인 해당기업

- | | |
|---|-----------------------------|
| 1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 청년창업인 경우 |
| 2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인 경우 |
| 3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
| 4 | 에너지기술중소기업인 경우 |
| 5 | 수도권과밀억제권 지역에서 수입금액 8천 만원 이하 |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다. 법인세 감면

(추가감면)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 ~ 50% 추가감면

*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100% 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은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 Ex) 제조업으로 '22년 창업한 중소기업(50% 감면대상인 경우)의 상시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경우[('22) 10명 → ('23) 15명 → ('24) 20명]

– ('22 과세연도) 50% 감면

– ('23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25% $[50\% \times (15-10)/10]$ = 총 75%감면

– ('24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16.7% $[50\% \times (20-15)/15]$ = 총 66.7%감면

- Ex)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23) 8명 → ('24) 16명]

– ('23 과세연도) 50% 감면

– ('24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30% $(60\% \times 1/2)$ = 총 80% 감면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60%) 증가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Ex)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마. 과세표준의 계산

1.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공제감면* 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2.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최저한세란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 · 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입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감면 후 세액이 감면 전 과세표준 × 7%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바. 신고서 작성사례

1. 인적사항

- 법인명 : (주)세미래랑(101-81-12345)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사업연도 : 2024. 1. 1 ~ 12.31
- 대표자 : 강길동
- 설립일자 : 2020. 5. 1
-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임

2. 자료내용

- 수입금액 4,200,000,000원
- 법인세 공제후 당기순이익 : 228,000,000(이자수익 : 11,000,000 → 이자수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통칙6-0...2))
→ 감면사업 관련 소득 : 217,000,000
- 법인세등, 재고자산평가감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3,000,000
- 사업연도 중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원천징수 납부세액 : 1,500,000 .중간예납세액 : 12,000,000
- 수입금액 : 1,500,000,000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바. 신고서 작성사례

3. 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

① 과세표준 금액 : 228,000,000(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 3,000,000(세무조정) = 231,000,000

② 산출세액 : 231,000,000(과세표준) × (19%)* = 23,890,000

* 2억이하 9%, 2억초과 200억이하 19%, 200억초과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

*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 : 과세표준 × 12/사업연도월수 × 세율 × 사업연도월수/12

③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6)

23,890,000(산출세액) × 217,000,000(감면소득)/231,000,000(과세표준) × 50% = 11,221,060

④ 최저한세 계산

아래 1)과 2)중 많은 금액 16,17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

1) 231,000,000(과세표준) × 7%(최저한세율) = 16,170,000

2) 23,890,000(산출세액) - 11,221,060(감면세액) = 11,668,940(감면후 세액)

* 최저한세 적용으로 4,501,060원 만큼 감면을 덜 받아야 함

⑤ 납부세액 : 16,170,000 - 1,500,000(원천납부세액) - 12,000,000(중간예납) = 2,670,000

(*) 창소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 중복감면의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지역, 최초 창업, 업종, 대표자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최소 50%~ 최대 100%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불가능한 공제 및 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X	O	O	X	X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사. 주요 질의응답

Q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업종이 다른 별도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A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거주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조특, 서면-2020-법인-1374, 2020.03.27)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사. 주요 질의응답

Q 사업자등록 후 실질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존사업자가 해당 사업자 폐업 후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할 때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A 개인사업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사. 주요 질의응답

Q 창업 당시 청년창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이후 지분율을 조정하여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창업 당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업 이후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어도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Q 창업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2명으로, 최대주주 1인이 대표자이면서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2인(지분율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 대표자인 주주1인이 창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사. 주요 질의응답

Q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 최대주주 및 대표자를 창업자에서 다른 청년으로 변경할 시 계속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청년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기존 창업자에서 다른 청년으로 대표를 변경하면서 창업자의 주식을 새로운 대표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청년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사. 주요 질의응답

Q 창업 후 최초 발생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던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세액감면 신청을 취소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새로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창업중소기업**)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제2항(**창업벤처기업**)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당초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Q 벤처기업 확인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 유형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이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여부에 관계없이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 **다른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사. 주요 질의응답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적격 법인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법인이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창업중소기업)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던 **개인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동일 과세기간에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후 동일 사업연도 내에 해당 지점을 폐쇄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사. 주요 질의응답

Q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청년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감면비율(50%→100%)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게 적용되는 감면비율(100%)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창업당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가. 개요

1. 대기업에 비하여 자금·인력 부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납부할 세액에서 5~3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가 창업단계에서 일정한 기간(5년) 동안 감면(기간 감면)하는 것과 달리 **사업(영업)단계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 중소기업과 소기업별, 수도권 내의 지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 구분별, 도매업 등·지식기반산업·기타 제조업 등 업종별로 구분하고 **5~3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조특법§7).
3. 중소기업으로서 접근성이 높아 조세혜택을 받기 용이하지만 중복지원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다른 공제·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나. 감면대상

1. 내국인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에서는 다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알뜰주유소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2 3호에 따른 주유소 중 '22.1.1.~'23. 12.31.까지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것
- 동 기간 중 매 분기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석유제품 구매량이 해당 분기 석유제품 판매량의 50%이상일 것
-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영업할 것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다. 감면율

◎ 규모별 · 지역별 · 업종별 감면율

기업규모	사업장 소재지	감면업종	감면율
소기업	수도권내	제조업 등	20%
		도 · 소매, 의료업	10%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30%
		도 · 소매, 의료업	10%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5%
중기업	수도권외	제조업 등	15%
		도 · 소매, 의료업	5%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5%

(*) 수도권의 범위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합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전체(제외지역 없음)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 소기업 기준

붙임.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기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 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80억 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 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 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10억 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평균매출액등 10억 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라. 감면세액

1.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감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text{감면세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소득}}{\text{과세표준}} \times \text{감면율}(5\sim 30\%)$$

2. **감면소득**은 해당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규정을 준용 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입니다

3. 한도

-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백만원)
- 2) 그 밖의 경우 : 1억 원
- 3) 알뜰주유소 석유판매업소득에 대한 감면 한도 : 없음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 중복감면의 배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세지원 제도로 업종, 매출액, 소재지 등에 따라 감면 세율이 최소 5% ~ 최대 30%에 달합니다. 동 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불가능한 공제 및 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통합투자 세액감면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X	O	O	X	X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4.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24)

가. 개요

1.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舊 조특법 §5),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4),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5) 등

2.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하고,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4.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24)

나. 공제대상

1. 공제대상 자산 및 업종

모든 내국인(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공제대상이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유흥주점업, 호텔·여관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은 제외합니다.**

2. 공제대상 자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기타 유형·무형자산**

①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자산(*)**외의 사업용 유형자산

(*) 토지와 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② 건물, 구축물, 운반구 등에 해당되나, 예외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자산

- 연구·인력개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지식재산권(*)**(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 등록한 것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4.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24)

나. 공제대상

3. 공제금액(기본공제금액 및 추가공제금액)

- 기본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일반기업 1%, 중견기업 5%),
신성장사업화시설 12%(일반기업 3%, 중견기업 6%),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6%(일반·중견기업 8%)
- 추가공제 금액 : 해당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3%(국가전략기술 4%). 단,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합니다.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 범위

구 분	공제대상 자산
건설업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어업	어업용 선박
운수업	차량(자가용 제외) 및 운반구
도소매업, 물류산업	운반용 화물자동차, 무인반송차, 창고시설 등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건축물 및 승강기 등 부속설비
전문·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소기업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회계 S/W 등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4.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24)

다. 투자금액 계산 및 추징

1.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text{Max}(\text{①}, \text{②}) - (\text{③} + \text{④})$

- ①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
- ②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 ③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
- ④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①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 전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3} \times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 직전 3년간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당해연도 창업한 경우 포함) 증가분 추가공제 적용 제외

3. 공제세액의 추징

투자완료일부터 2년(공제대상 건물과 구축물은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자산을 처분(임대포함)한 경우 세액 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 중복감면의 배제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으로 업종, 사업용자산, 지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투자액에 대하여 최소 1%~최대 25%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불가능한 공제 및 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X	O	O	X	X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의8)

가. 개요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배제 업종) 소비성 서비스업 등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의8)

다. 공제액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공제액 (3년간 공제)

구분	중소기업 (수도권 외)	중소기업 (수도권)	중견기업	대기업
청년 등 상시근로자(*)	1,550만 원	1,45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950만 원	850만 원	450만 원	-

청년 범위: 15~34세

추가공제 = 정규직전환 / 육아휴직 복귀자 × 공제액 (해당 연도 공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만 원	900만 원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의8)

라. 사후관리

사후관리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청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추징



- (1)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 (2)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의8)

마. 기타사항

상시근로자의 개념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제외대상)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의8)

마. 기타사항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개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1.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4.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의8)

마. 기타사항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상시근로자 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며, 상시근로자수 중 100의 1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text{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수} = \frac{\text{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text{청년 등 상시 근로자수} = \frac{\text{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의8)

마. 기타사항

주요 차이점 및 유의사항

-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 연령범위* 확대, 경력단절여성을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
- 청년의 범위를 만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연령범위 확대
- 23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중복 적용 불가)

단위:만원

구분	공제액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1년 지원)	1,300	900
육아휴직 복귀자(1년 지원)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 ·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 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의8)

마. 기타사항

통합고용세액공제 서식 사례(1차년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청년 상시근로자수(①)	0	0	3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②)	0	0	2
전체 상시근로자수(③)	0	0	5

• 2023년도 공제금액 계산(1차년도)

(1) 근로자 수 계산

- 청년 : 3명 증가
- 청년 외 : 2명 증가
-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 청년 3명 X 1,450만원 = 4,350만원
- 청년 외 2명 X 850만원 = 1,700만원
- = 6,050만원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 중복감면의 배제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직전 사업연도 대비 고용 인원당 혜택을 부여하는 기본공제 정규직 전환자와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1인당 혜택을 부여하는 추가공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액 또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법인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다른 세액공제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 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 세액공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0	0	0	0	0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의8)

바. 주요 질의응답

Q 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를 의미하므로,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 * 상시근로자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관계인 사람,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의8)

바. 주요 질의응답

Q 한국에 2년 거주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미가입하여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A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기타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제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관계인 사람,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의8)

바. 주요 질의응답

Q 국민연금을 부담하지 않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A 국민연금을 부담하지 않는 6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기타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상시근로자 제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관계인 사람,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참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의8)

바. 주요 질의응답

Q 직전 사업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29세 이하)가 해당 사업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해서 청년으로 고용증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매월 말 현재 기준으로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 규정은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법인세 추가 납부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23년 신설되면서 청년 연령범위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의8)

바. 주요 질의응답

Q 본점과 지점이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보유한 법인입니다. 본점과 지점은 합산하여 인원수를 계산하고 있는 것인데, 수도권과 지방의 공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 건가요?

A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 시 수도권 내·외 사업장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증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1인당 공제금액은 수도권 내·외 증가 인원 수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중소기업으로 본점과 지점이 수도권내와 수도권밖에 있는 경우, 수도권내 사업장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및 청년등외 상시근로자로 증가인원을 계산하고, 수도권밖 사업장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및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증가인원을 계산하여 공제금액을 곱해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 전체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에서 직전사업연도에 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다른 쪽의 증가인원 중에서 감소한 인원 수를 차감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의8)

바. 주요 질의응답

Q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0.25명)인 경우도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A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0.25명 증가분도 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Q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가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최초)에 받은 공제세액과 당해 사업연도 공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1차, 최초) 공제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공제(2차)하고, 해당 사업연도 증가분에 대한 최초(1차) 공제세액을 합하여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참고>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8서식] 에 1차년도 세액공제액(해당 사업연도 증가분)과 2차년도 세액공제액(직전 사업연도 공제액)을 각각 기재하고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의8)

바. 주요 질의응답

Q 직전 사업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하여 1차 공제받았으나, 해당 사업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는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한 경우에는 당초 "청년 등"으로 최초 공제받은 우대공제액을 적용한 추가공제는 불가하지만 "**청년외**"에 대하여 적용하는 **일반공제액**(제29조의7제1항제2호의금액)을 적용하여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추가납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 제5항)하여야 하고, 이 때,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6. 특례적용 시 유의사항

가. 중복지원 배제(조특법§24)

1. 국가등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등의 자산, 국가등이 대납한 이자비용, 국가등의 저리융자시 이자지원금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 국가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투자관련 세액공제 등 적용 시 투자(취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조특법§127①).
2. 조특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127②). 이 때 중복적용의 판단기준은 투자자산별로 판단합니다.
3. 동일한 과세연도에 내국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등과 조특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 받는 경우
 - 각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조특법§127③).
4.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특법 제127조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감면규정과 공제규정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127④).
5.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각종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127⑤).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6. 특례적용 시 유의사항

나. 농어촌특별세 적용(농특법§5)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법인의 경우 당해 **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농특법 제5조).**
2. 여기서 감면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
 - 비과세·소득공제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익금불산입·준비금손금산입·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등은 농어촌 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6. 특례적용 시 유의사항

나. 농어촌특별세 적용(농특법§5)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농특법§4))

유 형	비 과 세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99의11)
기술 및 인력 개발, 공익사업 등 국가 경쟁력 확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조특법§10의2)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 •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12의2)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13)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0의3)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3)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3)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3의2)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4) • 영농·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조특법§66, 67)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조특법§68) •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4의8①, ③)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6. 특례적용 시 유의사항

나. 농어촌특별세 적용(농특법§5)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농특법§4))

유 형	비 과 세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고용증대를 위한 감면	•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30의2)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30의4)
기 타	• 조특법§121의2에 따른 감면 외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4⑦).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6. 특례적용 시 유의사항

다. 최저한세의 적용(조특법§132)

1.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세제의 중립성·국민개념·재정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최저한세 제도입니다

– 최저한세 적용대상은 「법인세법」 제2조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됩니다

2. 최저한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일부 공제·감면 항목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법§55의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조특법§100의32) 등 미적용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6. 특례적용 시 유의사항

다. 최저한세의 적용(조특법§132)

3. 최저한세 계산구조

1.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 후의 세액 (A)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소득공제, 익금불산입 · 비과세 금액, 세액공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후의 세액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 전의 과세표준×최저한세율 (B)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소득공제, 익금불산입 · 비과세 금액

전의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중 큰 금액

3. 가산세 등

- 가산세
- 이자상당가산액
- 감면세액의 추징세액

4. 최저한세 적용제외 감면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농업소득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R&D세액공제 등

* $A < B \rightarrow (B - A)$ 만큼 공제 · 감면 적용 부인(향후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최저한세 적용세율

구분	과세표준	'10년	'11~'12년	'13년	'14년이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7%	7%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8%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9%	9%	9%
	100억 이하	10%	10%	10%	10%
	1천억 이하	11%	11%	12%	12%
	1천억 초과	14%	14%	16%	17%

2.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6. 특례적용 시 유의사항

라. 구분경리

1. 개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일부 감면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감면해 주는 제도이므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경리하여 감면사업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조세감면을 적용**하여야 합니다.(ex)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text{감면세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소득}}{\text{과세표준}} \times \text{감면율}$$

2. 구분경리 방법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제113조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아래와 같이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공통손익 구분		구분경리(안분계산) 방법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공통익금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
공통 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

CONTENTS

2025년 중소기업 세무교육

I 법인세 개요

1-1. 법인세 개요 01

II 중소기업 주요 세무지원

2-1. 중소기업 주요 세무특례 08
2-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1
(조특법§6)
2-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31
2-4.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24) 37
2-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42
(조특법§29의8)
2-6. 특례적용 시 유의사항 58

III 기타 주요 세무유의사항

3-1. 불성실 세금실고 시 불이익 66
3-2. 업무무관 가지금금과 세금 67
3-3.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69
세금
3-4. 주금(자본금)의 가장납입과 70
세무
3-5. 분식결산과 세무 71
3-6.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72

3. 기타 주요 세무 유의사항

3-1. 불성실 세금신고 시 불이익

1. 가산세 부담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외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60%)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탈루세액(가산세 포함)의 추징은 물론,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킨 만큼 이를 가져간 사람(가져간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법인이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3.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와 부속서류 내용은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들 입력자료를 토대로 전 법인을 상대로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 성실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신고내용에 대해 정밀조사** 받게 됩니다.

3 · 기타 주요 세무 유의사항

3-2.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

1.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현금에 대한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등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표기하는 계정항목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하며, 대부분 법인 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시가(가중평균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와 회사계상 수입이자 차액을 계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시가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하며, 해당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3. 기타 주요 세무 유의사항

3-2.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

3.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불성실 신고 사례

불성실 신고 사례	과세 내용
대표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바로 그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위장하고 해당 주식을 소각하여 의제배당소득 과세는 회피하고 주식양도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	대표자가 실제로 법인에게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대표자의 주식을 유상감자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605, '22.02.10. 등)
법인 소유의 특허권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대표자가 해당 특허권을 법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위장하여 가지급금을 정리	대표자가 취득한 특허권의 실질 소유는 법인으로 보고 특허권 양도대금 손금부인 및 상여처분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241, '22.10.27. 등)

3. 기타 주요 세무 유의사항

3-3.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1. 사적경비의 회계처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가사경비로 사용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인정됩니다.

만약,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주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가 과세(부정행위 40%, 역외거래 60% 가산세 포함)되며, 기업주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변칙처리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됨**은 물론 기업자금의 횡령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법인 보유·임차 주택을 사적 사용

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유지·관리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 및 직원을 제외한 사람

[유지·관리비 및 적정임대료 여부]

구 분	유지·관리비 손금산입 여부	적정임대료 계상 여부
주택을 출자임원 또는 그 친족에게 제공한 경우	유지·관리비는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주택을 비출자 임원·소액주주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유지·관리비는 손금산입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하지 않음

3 · 기타 주요 세무 유의사항

3-4. 주금(자본금)의 가장납입과 세무

1. 주금의 가장납입이란?

주금의 가장납입이란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주금의 가장납입과 세무

몇 년 전 사채업자들이 주금 가장납입 방법을 통해 1만여 개의 개인 유사법인 (일명 깡통법인)을 설립해 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자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부실화는 물론, 장부에 기록된 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회계장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주금 가장납입 행위를 한 자, 행위에 응한 자, 중개한 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계산상으로도 주금 가장납입액의 경우 상법에 의해 법인 설립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인의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므로, 그 가장납입액만큼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가로 종합소득세까지 과세하게 됩니다.**

3 · 기타 주요 세무 유의사항

3-5. 분식결산과 세무

1. 분식결산이란?

분식결산(window dressing settlement)은 **일반적인 탈세와 반대로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액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려 결산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자산과 매출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하거나, 비용과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 분식결산의 이유와 피해

분식결산은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조작함으로써 기업의 신인도와 주가를 높여 금융·증권시장 등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거나, 기업주가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하여 대부분 행하여집니다.**

이와 같은 분식결산은 해당 기업이 공시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채권자·주주에게 많은 손실을 끼치게 되며, 외국투자자들에게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을 주어 외국투자자본의 국내증시 투자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분식결산 기업은 투자자의 배당압력 및 세금 과다납부 등으로 더 큰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3. 분식결산과 세무

분식결산으로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세무상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3 · 기타 주요 세무 유의사항

3-6.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1. 지출증빙 수취의 중요성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증명서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지출 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출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물품구매와 세무

건설현장 등에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없이 현금으로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고 하여 무턱대고 구입하였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선은 원가가 적게 들어 이익이 늘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매입금액의 10%)를 받을 수 없고, 지출증명서류가 없어 그만큼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금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지출증명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전산신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분석되어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으로 통보되고, 결국,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2025년 보조금 교육

2025.09.



강사소개

[보조금 검증의 전문가]

공인회계사, 송영선

지난 10여 년 간, 수천 건의 보조금 사업 검증과 평가를 수행해 왔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보조금 검증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범부처통합 평가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환경부 등

우리회계법인 출신, 보조금 검증 전문 회계사 그룹 "TEAM 송영선" 대표 전문 공인회계사 총 7인



Homepage(질의응답, 문의, 상담)

www.보조금.com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CONTENTS

2025년 보조금 교육

I 보조금의 이해

1-1.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이해	01
1-2. 국고보조금의 유형	02
1-3. 지방보조금의 유형	04
1-4. 보조사업 진행절차	05
1-5. 보조금 집행 프로세스	06
1-6. 보조금 회계감사 및 정산보고서 검증	07
1-7. 보조금 관리시스템	10
1-8. 정부지원사업의 주요유형	11

II 보조금의 사용 및 기타사항

2-1. 인건비	13
2-2. 운영비	15
2-3. 여비	22
2-4.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유형자산	24
2-5. 주요 Check List	25
2-6. 보조금의 회계처리	28
2-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29

III 주요 지원사업 및 유의사항

3-1. 주요지원사업(자영업)	50
3-2. 주요 지원사업(제조업(창업))	52
3-3. 주요 지원사업(제조업)	53
3-4. 주요 지원사업(수출)	54
3-5. 주요 지원사업(전업종)	55
3-6. 주요 지원사업(주요 site)	56
3-7. 제안 시 필수 3요소	58
3-8. 지원 시 세부요건	59
3-9. 지원금의 주사용 용도 설정	60

CONTENTS

2025년 보조금 교육

I 보조금의 이해

1-1.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이해	01
1-2. 국고보조금의 유형	02
1-3. 지방보조금의 유형	04
1-4. 보조사업 진행절차	05
1-5. 보조금 집행 프로세스	06
1-6. 보조금 회계감사 및 정산보고서 검증	07
1-7. 보조금 관리시스템	10
1-8. 정부지원사업의 주요유형	11

II 보조금의 사용 및 기타사항

2-1. 인건비	13
2-2. 운영비	15
2-3. 여비	22
2-4.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유형자산	24
2-5. 주요 Check List	25
2-6. 보조금의 회계처리	28
2-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29

III 주요 지원사업 및 유의사항

3-1. 주요지원사업(자영업)	50
3-2. 주요 지원사업(제조업(창업))	52
3-3. 주요 지원사업(제조업)	53
3-4. 주요 지원사업(수출)	54
3-5. 주요 지원사업(전업종)	55
3-6. 주요 지원사업(주요 site)	56
3-7. 제안 시 필수 3요소	58
3-8. 지원 시 세부요건	59
3-9. 지원금의 주사용 용도 설정	60

1. 보조금의 이해

1-1.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이해

국고보조금의 정의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보조금의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1. 보조금의 이해

1-2. 국고보조금의 유형

1) 보조금 사용 용도의 제한성 유무

구분	내용
특정보조금 (Specific Grants)	보조금의 사용용도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특정보조금은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가 요구하는 특정의 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 하는 기능적 보조금임
일반보조금 (General Grants)	보조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지방교부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보조금 지원 대상

구분	내용
자치단체보조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민간보조금	개인 또는 법인의 시설운영이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보조금

1. 보조금의 이해

1-2. 국고보조금의 유형

3) 보조금 지원내용

구분	내용
경상보조금	인건비,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성 경비에 대한 경상적 지원을 위한 보조금
자본보조금	토지매입비, 시설건축비, 자산취득 등을 위한 자본적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1. 보조금의 이해

1-3. 지방보조금의 유형

1) 지방보조금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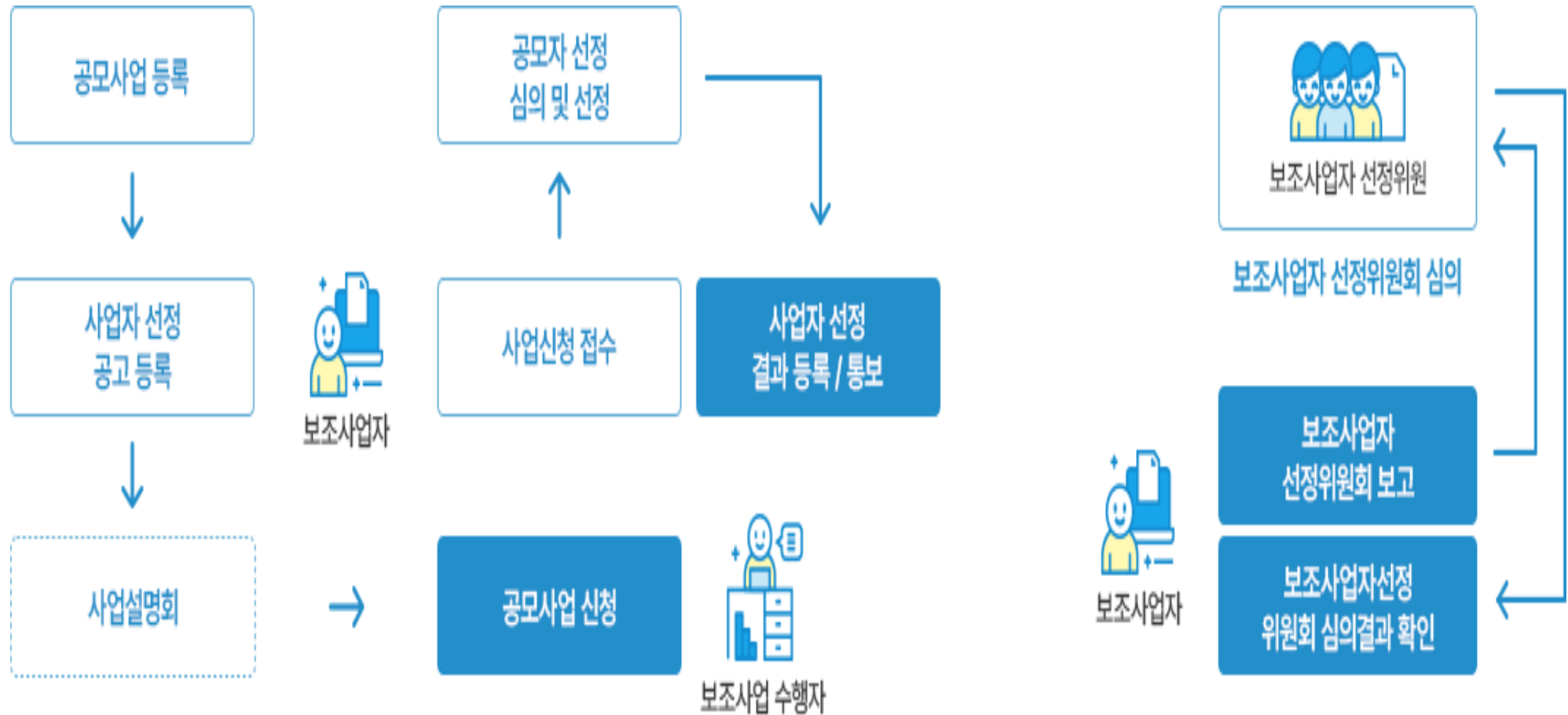
구분	내용
공공단체 보조	1.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 예비근육성지원 경상·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자본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2, 301-03)
민간 보조	1.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2) 지방보조금의 관련규정

구분	내용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신규) :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실적보고서 작성 등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신규): 보조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등

1 · 보조금의 이해

1-4. 보조사업 진행절차



1. 보조금의 이해

1-5. 보조금 집행 프로세스



1. 보조금의 이해

1-6. 보조금 회계감사 및 정산보고서 검증

국고보조금 회계감사 및 정산보고서 검증

- 회계감사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
- 정산보고서 검증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회계감사 및 정산보고서 검증

- 회계감사 :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
 - 정산보고서 검증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
 -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상기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을 포함**하여야 함

XX 종합사회복지관	목 차
지방보조금수지계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1 ~ 3
(첨부) 지방보조금수지계산서	----- 4 ~ 6
주석	----- 7 ~ 15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 16 ~ 17

2021년 1월 01일 부탄
2021년 12월 31일 현재

XX 회계법인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2022년 2월 24일

이사의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아동복지회")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익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 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당회의 2021년 12월 31일 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 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홀트 아동복지회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 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사항

우리는 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는 바, 당해 감사범위에는 주석 13에 서 기술하고 있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석 13 의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하여도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 1 -

감사보고서에는 시행규칙제6조에 따
른 별지5호서식 들어가야 함

1. 보조금의 이해

1-6. 보조금 회계감사 및 정산보고서 검증(국고보조금이 1억 이상 or 지방보조금이 3억 이상)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 : 실적보고서]

[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 : 정산보고서]

[시행규칙 별지 4호 서식 : 검증 관련 보고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13.>

(4쪽 중 제1쪽)

실 적 보 고 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보조사업의 사업개요, 추진실적,
계획대비 실적, 성과 등에 대하여
정성적인 기술하는 보고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쪽)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분	예산액 (교부조금)	%	집행액	%	집행잔액	이 자 발성액	비 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출 이자발성액 "보조금" 이 "집행잔액"	
자부담							

2. 내역별·일차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출내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보조금	총계					직불카드
	소계					계좌입금
자부담	총계					
	소계					

※ 지출입금액은 보조금 영수증의 영수증 번호, 영수증일, 지출금액, 지급방법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출납장부를 첨부합니다.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사업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 사유란 예산사업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미지출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210mm × 297mm [세상지 (B5format)]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쪽)

검증 관련 보고서

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명칭)” 이(가) 2024년 00월 00일부터 2024년 00월 00일 까지 수행한 “(보조사업의 명칭)” 의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명칭)” 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은 이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본인이 실적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으로,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년 월 일

OO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또는 OO 감사반 공인회계사 □ □ □

※ 공회 직위 보고서의 주일본 다중과 같습니다.

① 제4호 주일본(지보보사업자)

② 주일본 주일: 공회직위 영수증과 일치, 지방보조사업자의 제4호 주일본에 대한 부분 일치

③ 불이: 주일: 주일본 주일본과 일치, 공회직위

④ 결은: 주일: 지방보조사업 영수증과 일치, 집행잔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지방보조금반환액

⑤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호 주일본과 일치, 보조금 반환 사유 미발생, 미지출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⑥ 공회보고서(공회보고서) 주일본,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에 작성한 금액과 일치, 주일본과 일치, 주일본과 일치

210mm × 297mm [세상지 (B5format)]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에 대한 검증을 완료한
감사인이 집행에 대한 지출서류 및 반납 및 이
자에 대하여 검토하고 작성한 검증보고서

1. 보조금의 이해

1-7. 보조금 관리시스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보조금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써 **국고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사후관리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 e나라도움 내에서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업무 및 검증보고서 발행 가능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계획부터 정보공개 및 공시 등의 사후관리까지 업무처리 전 과정을 정보화하여 관리
 -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 공모, 심의, 교부, 집행, 정산, 중요재산 관리 등의 사후관리까지**의 전 업무 처리과정을 온라인으로 구현
 - **전자증빙을 활용한 온라인 집행·정산관리 도입** 및 예치계좌를 통해 보조금 집행 업무의 효율성 강화
- 보탬e 내에서 지방보조금 정산결과 검토는 가능하지만 검증보고서는 별도 파일로 첨부하여여 함

1. 보조금의 이해

1-8. 정부지원사업의 주요유형

구분	보조금(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국가연구개발비
관련 법률 및 규정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보조금법)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보조금법) 3.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등 교부주체에 따라 다름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2020년 이전에 과학기술기본법을 모법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
관련 시스템	1. e-나라도움 2. 보탬e	1. 통합 Ezbaro 2. 통합RCMS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기타 주요 차이점	1. 국가가 지자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가없이 재원을 지급 2. 비목체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준함	1. 연구과제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연구개발기관, 실시권은 정부부처로 사업화 시 기술료 납부 의무 2. 비목체계는 연구 관련 비목

CONTENTS

2025년 보조금 교육

I 보조금의 이해

1-1.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이해	01
1-2. 국고보조금의 유형	02
1-3. 지방보조금의 유형	04
1-4. 보조사업 진행절차	05
1-5. 보조금 집행 프로세스	06
1-6. 보조금 회계감사 및 정산보고서 검증	07
1-7. 보조금 관리시스템	10
1-8. 정부지원사업의 주요유형	11

II 보조금의 사용 및 기타사항

2-1. 인건비	13
2-2. 운영비	15
2-3. 여비	22
2-4.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유형자산	24
2-5. 주요 Check List	25
2-6. 보조금의 회계처리	28
2-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29

III 주요 지원사업 및 유의사항

3-1. 주요지원사업(자영업)	50
3-2. 주요 지원사업(제조업(창업))	52
3-3. 주요 지원사업(제조업)	53
3-4. 주요 지원사업(수출)	54
3-5. 주요 지원사업(전업종)	55
3-6. 주요 지원사업(주요 site)	56
3-7. 제안 시 필수 3요소	58
3-8. 지원 시 세부요건	59
3-9. 지원금의 주사용 용도 설정	60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1. 인건비 가. 산정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 명예퇴직수당 ,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총당금 5.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 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인건비 (05)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 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로,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1. 인건비

나. 증빙서류 및 불인정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증빙서류	불인정기준
인건비	보수/상용임금/ 일용임금	○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대장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계좌이체 증빙서류	○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개인별 참여율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타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 관련근거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4조 4항, 5항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2. 운영비 가. 산정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2. 운영비 가. 산정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채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피복비(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2. 운영비 가. 산정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운영비 (210)	급량비(04)	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주식 및 부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특근매식비(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일·숙직비(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유류비 등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성비투자 상환금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2. 운영비 가. 산정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운영비 (210)	차량비 등 (10)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시험연구비 (13)	1.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2. 운영비 가. 산정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운영비 (210)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관리용역비 (15)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2. 운영비

나. 증빙서류 및 불인정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증빙서류	불인정기준
운영비	일반수용비	○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련자료에 대한 구독료, 업무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또는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 수행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 납입고지서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특근매식비	○ 카드매출전표 ○ 지출결의서 ○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 참여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야근 식대로 집행된 금액 ○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 식대
	임차료	○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 관련근거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4조 4항, 5항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2. 운영비

나. 증빙서류 및 불인정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증빙서류	불인정기준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위탁사업업체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 계약서 작성에 의한 경우 계약서 사본	○ 업무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차량비/재료비/복리후생비	○ 내부결재문서(세부 지급내역 표기) ○ 계좌이체증명/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경비

(*) 관련근거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4조 4항, 5항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3. 여비

가. 산정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국외교육여비 (03)	1.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3. 여비

나. 증빙서류 및 불인정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증빙서류	불인정기준
여비	국내여비	- 출장신청서 - 출장관련 서류 -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 실비에 의한 국내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 국내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국외여비/국외 교육여비	- 내부결재문서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 국외여비 지급일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 실비에 의한 국외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 국외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 숙박비, 식비 등을 국외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 관련근거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4조 4항, 5항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4.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유형자산 가. 산정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업무추진비(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부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중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약,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연구개발비(260)	연구개발비 (01)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4.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유형자산

나. 증빙서류 및 불인정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증빙서류	불인정기준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	-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 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기관업무비	카드매출전표	(내부)규정 없이 직무·직책에 맞지 않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	-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해당금액 입금증) - 계약서 사본/ 관련 보고서	수행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퍼센트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 내부결재문서(자산취득사유, 물품명, 소요예산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구매의뢰서(자산취득비)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비 -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

(*) 관련근거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4조 4항, 5항, 7항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5. 주요 Check List

국고보조금 공통 Checklist					
구분		내용	네	아니오 (해당사항없음)	근거 조항(클릭 시 해당조문 이동)
필수확인	별도 계정 등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회계 처리를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별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 별도계정 등
	보조금 사용방법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였으며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를 제출하였는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8조 보조금 사용방법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였는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위탁정산수수료 반영	위탁정산수수료 집행 반영하지 않았다면 집행 반영하도록 재요청			(별표 1)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_ 운영비
	이월승인 여부	이월금이 있는 경우 승인문서를 제출하였는가?(금액에 관계없이 승인사항임)			
	사업비의 이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이월금이라고 하더라도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는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보조사업비의 이월
	기간	사업기간 이후 사업비 집행은 불인정임(예외사항에 해당시 집행없음으로 해석) 확인했는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 4호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
	가족관계회사 거래여부	가족관계 회사 등과의 거래시 실제 발생한 거래인지와 가격·수량 등이 내용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할 때 정상적인 거래인지 확인하였는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
	통장확인	사업비 통장잔액과 사업비 산액이 일치하며 전 거래내역을 주영하여 사계좌(사업비 집행목적 외)로 인금한 내역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는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수익 반환	발생이자는 사업기간중 이자만 입력하였는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사업기간중발생이자는 전액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였는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보조금의 반환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캐시백 등 부수수익은 반납하였는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9조의 2 보조사업비 카드 부수수익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반납하였는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1항 보조사업의 수익금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반납하였는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2항 부가가치세 환급금	
보조사업 관련 계약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를 관리하였는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5. 주요 Check List

국고보조금 공통 Checklist					
중앙관서의 장 승인사항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여부 확인	가. 수행기관의 변경, 사업기간의 변경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나. 최종 목표의 변경			
		다. 최초 협약한 사업비 중 비목간 변경			
		라. 참여기관의 변경			
		마. 최초 협약한 기금사업비의 사업운영비,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증액			
		바.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사. 사업비 관리계획의 변경			
		아. 비목 중 인건비, 여비의 세목간 변경			
		자. 취득가액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기자재 및 시설 중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기자재 및 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사업비 이월(본 협약서와 동일한 사업의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 통보사항	통보여부 확인	가.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최초 협약한 사업비 중 세목간 변경			
		다. 승인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협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5. 주요 Check List

국고보조금 공통 Checklist					
불인정사항	일반기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금액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4조 4항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적용하던 지급규정을 초과한 금액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4조 5항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까지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는 제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5조 4호, 9호, 10호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5조 5호, 6호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제12조 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5조 1호, 2호, 3호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5조 7호, 8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5조 5호, 11호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5조 12호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5조 6호
	인건비	해당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주요 기준을 확인하였는가			(별표 1)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_ 인건비
	운영비	해당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주요 기준을 확인하였는가			(별표 1)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_ 운영비
	여비	해당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주요 기준을 확인하였는가			(별표 1)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_ 여비
	업무추진비	해당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주요 기준을 확인하였는가			(별표 1)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_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해당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주요 기준을 확인하였는가			(별표 1)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_ 연구개발비
	유형자산	해당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주요 기준을 확인하였는가			(별표 1)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_ 유형자산
	기타 보조비목	해당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주요 기준을 확인하였는가			(별표 1)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6. 보조금의 회계처리

구분	관련 비용에서 상계(높은 영업이익)	수익으로 표시(직관적 표시)
수령시(2,000)	현금 2,000 /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현금 2,000 /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비용 (특허출원비지출) (1,000)	특허출원비(영업비용) 1,000 / 현금 1,000 <u>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1,000 / 특허출원비(영업비용) 1,000</u>	특허출원비(영업비용) 1,000 / 현금 1,000
장비(자산)취득 (1,000)	장비 1,000 / 현금 1,000 <u>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1,000 /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000</u>	장비 1,000 / 현금 1,000 <u>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1,000 /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000</u>
결산시 (감가상각비 200)	감가상각비 200 / 감가상각누계액 200 <u>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200 / 감가상각(영업비용) 200</u>	감가상각비 200 / 감가상각누계액 200 <u>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200 / 감가상각(영업비용) 200</u> <u>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1,000 / 국고보조금수익(매출 or 영업외수익) 1,000</u>
처분시 (매각 1,000)	현금 1,000 / 장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200 / 유형자산처분이익 200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800 / 유형자산처분이익 800	현금 1,000 / 장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200 / 유형자산처분이익 200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800 / 유형자산처분이익 800

일반기업회계기준

17.5. 자산관련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자산관련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17.7. 수익관련보조금은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상계하여 표시한다. 해당 보조금을 수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가. 부정수급의 개념

‘부정수급’이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함.

대상	사례
보조사업자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간접보조사업자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Ex)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경우 등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Ex) 사업비의 횡령, 편취, 유용, 목적 외 사용 및 불성실한 사업추진 등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 중요재산 임의처분 등
보조사업 계약업체 등	1.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나. 부정수급의 유형

(주요 빈발유형)

구 분		내 용	예시
허위 신청	허위 인력	근로자, 원생, 가족 등 <u>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u> 나 등원 하지 않은 원생을 <u>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허위 신청</u>	실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등
	허위 소득 및 재산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보조금 허위 신청 (소득·재산 미신고, 축소신고)	
	기타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증빙서류 작성 등으로 보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보조금 허위 신청	
허위 출결		보육시간, 근로시간, <u>훈련시간 등 출석일수 허위신고</u> , 대리 출석 등 보조금 지급요건에 출결이 포함되는 경우의 허위 출결	창업교육의 대리출석 등
가격 부풀리기		공사비, 장비 구입비 등의 <u>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 과다 수령</u>	Cash-back 거래 등
정산서류 조작		고정 지출 증빙자료를 <u>중복 사용</u> , <u>폐업 사업처 세금계산서 사용</u> 등	세금계산서 발급 후 수정계산서 발행 등
부적정 계약거래		보조사업자 가족간 거래 및 직원 명의의 거래업체 등 <u>특정관계 거래처와 계약을 통해 보조금 부정 집행</u>	불가피한 경우 상위보조사업자와 협의 필요
자부담 회피·대납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업체가 대납한 뒤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보조금을 (정당한보조금+자부담금)보다 과다하게 수령	
바우처카드 허위 결제		바우처카드를 부당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결제, 서비스 제공 시간보다 과다 청구, 해외출국자 결제 등	
목적외 사용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사업계획서 예산 외 사용(적시 변경수정 필요)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나. 부정수급의 유형

(주요 빈발유형)

구 분		내 용	예시
중요재산 임의처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을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무단으로 처분(대여, 양도, 담보 등)	
기타 (협의를 부정수급)		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 하는 경우	
광의의 부정수급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행정 담당자의 실수 등 행정상 착오로 인한 보조금 오지급	오지급 후 법인운영통장으로 중장기 운영 시 자금유용으로 추정
	행정시차	보조금 수급 자격요건 등의 변동 정보가 행정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시적인 보조금 오지급	
	사정변경	보조금 신청 당시에는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이후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타지역 거주 사업자의 미전입, 협약종료 후 1년 이상 사업체 미유지 등
	기타	그 외 보조사업자 등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는 부적정 지급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나. 부정수급의 유형

(단계별 유형)

구 분	내 용	예시
선정	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등의 선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허위 신청, 중복 선정, 선정업무 담당자와 선정 대상자의 결탁 등
집행	보조금 교부 뒤 해당 보조사업의 수행 및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가격 부풀리기, 자부담 대납, 바우처카드 허위결제, 허위 출결, 목적외 사용 등
사후관리	보조사업 종료 및 보조금 집행이 완료된 후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중요재산 임의처분 등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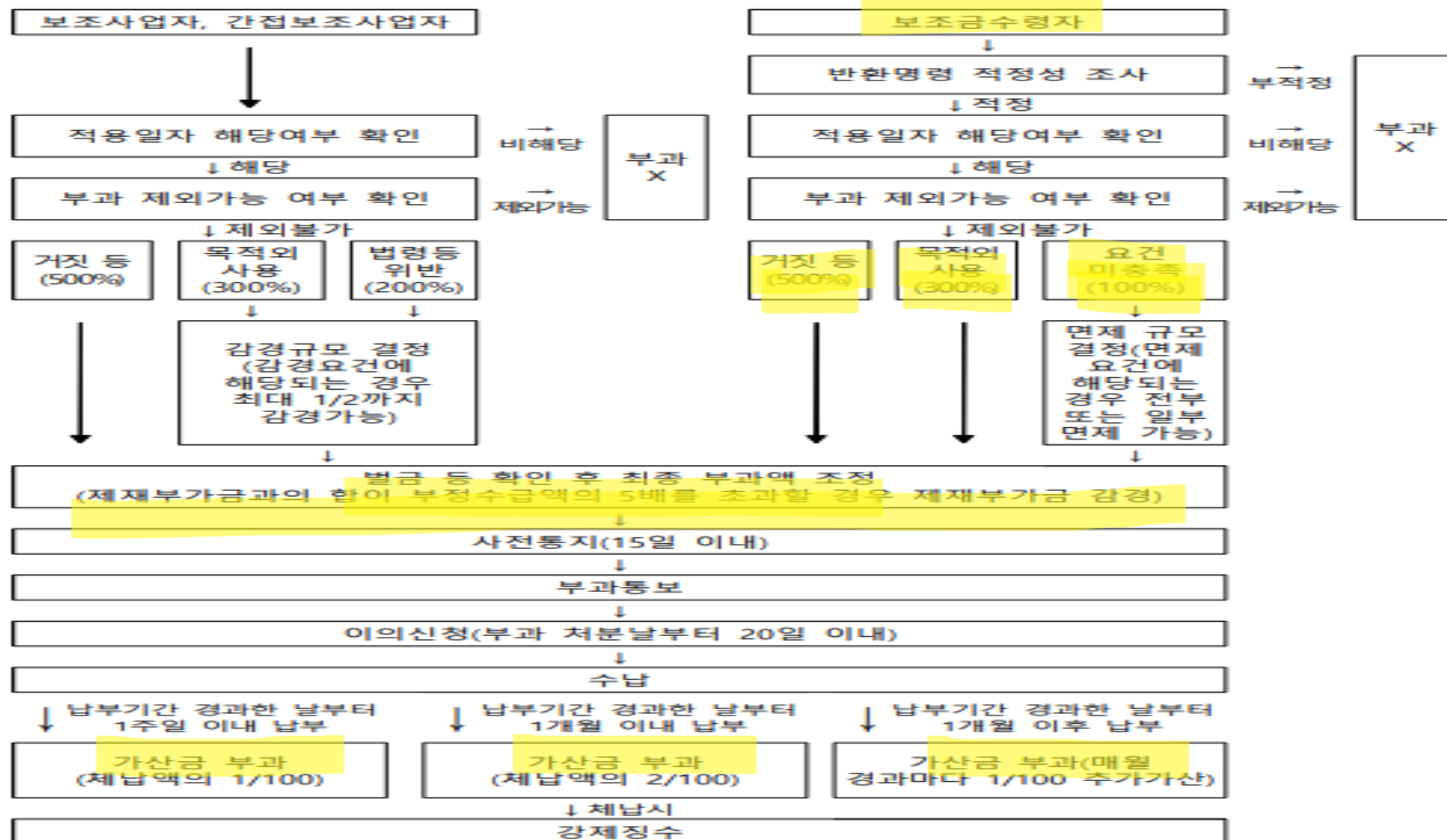
2-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다. 부정수급 제재절차

조치 사항	업무 내용	업무 주체	관련 법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중앙관서의 장 (소속 관서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 가능)	법 30조
↓			
보조금 반환 (보조사업자) · 보조금 환수 (보조금수령자)	◦ 교부결정 취소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 반환 명령 ◦ 보조금수령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	중앙관서의 장 (소속 관서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 가능)	법 31조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 반환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체납시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 징수 (최대 5%)	중앙관서의 장	법 33조의2
↓			
보조사업 수행 배제	◦ 교부 결정 취소 횟수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중앙관서의 장	법 31조의2
↓			
명단 공표	◦ 부정수급자 명단 등을 해당 중앙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	중앙관서의 장	법 36조의2
↓			
강제 징수 (반환금 등 미납시)	◦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 미납시 강제징수 ◦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	중앙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법 33조의3
↓			
신고포상금 (신고 등이 있을시)	◦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중앙관서의 장	법 39조의2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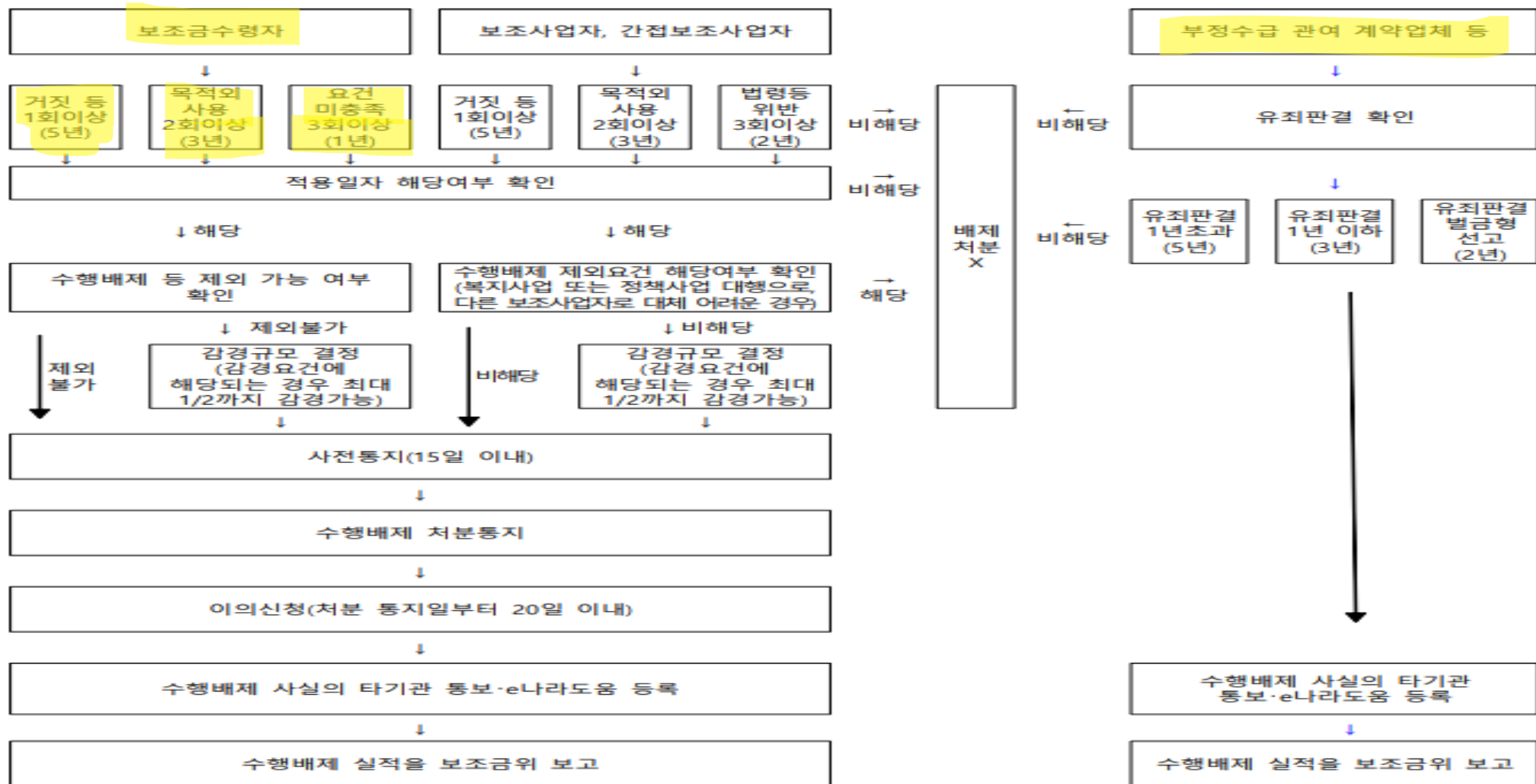
라. 제재부과금 및 가산금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마. 보조사업의 수행배제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바. 포상금의 지급

신고포상금은 **반환을 명한 금액의 30퍼센트로 지급**하며,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달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함.

구분	내용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30퍼센트 미만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금액(최소지급액)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최소 지급액은 500만원 한도)

(포상금 환수)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함.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사. 가격 부풀리기

유형	사례	단계	개선방안
가격 부풀리기	대학 교수가 현금으로 <u>시세보다 비싸게 물품을 구입하면서 시세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u> 으로公款 횡령	집행	예산 책정 및 정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공사비, 주요 제품 가격 등을 포함한 표준 단가제를 만들어 활용 필요
	XX관서로부터 글로벌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는 자가 가격을 부풀리고 연구용역비를 항공료, 골프비 등으로 정산하거나 직원 인건비를 높게 책정하는 수법 등을 동원해 6억원 편취	집행	예산 책정 및 정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공사비, 주요 제품 가격 등을 포함한 표준 단가제를 만들어 활용 필요
	XX자치단체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벌이면서 <u>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 11억 8천900만원을 더 받음</u>	집행	보조사업 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이체 등 거래내역이 남도록 함
	C사회복지관장이 경로식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u>음식재료 구매 대금 등을 부풀려 결제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u> 과 노인요양센터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수용 후 그 수입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횡령	집행	보조사업 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이체 등 거래내역이 남도록 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공업체가 <u>허위 공사사진, 시공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공비와 자재비 등 6억 8,499만원 편취</u>	집행	보조사업 관리자 및 관련 지자체 담당자등이 검사 과정에 참여하여 시공 적정성여부 등을 점검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아. 허위신청(허위인력)

유형	사례	단계	개선방안
허위신청 (허위인력)	OO노인요양원 대표 A는 근무한 사실이 없는 B, C, D를 원장으로 등재하고, D원장은 자신의 부인을 사무국장으로 허위로 등록한 후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처제에게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B원장도 자신의 부인을 직원으로, 대표A는 누나, 여동생, 친사돈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 후 이들에게 급여 지급	집행	가족관계 증명을 통해 가족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실사 정보 확인 필요
	직업전문학교에 종사하는 자가 청년취업 인턴제를 악용해 새로 취업한자로 위장신고 하여 약 1천 5백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	신청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국세청 원천징수 정보 확인을 통해 허위 인력 차단
	지역실업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학원장이 허위로 수강생을 등록해 훈련비 등 수익원을 편취	집행	국고보조금을 받는 교육생들에게 교육과정 등록 및 종료 등의 알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상이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함
	OO자치단체 관내 A어린이집 원장은 경기도 화성시 거주하는 영유아 7명을 허위 등록하여 4,778만원을 부당 수령	집행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는 수급자에게 SMS를 통해 알리고, 이상 있을 경우 연락을 받도록 함(만 18세 이하일 경우부모님에게 통보)
	국립대 교수는 정부 육성사업을 수행하면서 영리기업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실제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지원금 50%를 리베이트로 수수	집행	보조금을 제3자가 아닌 수급자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 보완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아. 허위신청(허위인력)

유형	사례	단계	개선방안
허위신청 (허위인력)	OO광고기획 주식회사 대표이사 C가 이미 입사한 R과 H에게 워크넷(취업정보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위탁운영기관인 (주) OO으로부터 취업상담 및 알선을 받아 마치 청년인턴으로 신규 채용한 것으로 가장하여 청년인턴채용 지원금을 부정수급	선정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국세청 원천징수 정보 확인을 통해 허위 인력 차단
	수행할 연구과제가 없어 위촉연구원으로 채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A를 위촉 연구원으로 임용한 후 퇴직 시까지 어떠한 연구과제에도 참여시키지 않은 채 급여 지급	집행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이력관리(사업명, 사업내용, 성명, 투입기간, 투입율 등)를 실시하여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함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자. 허위신청(허위출결)

유형	사례	단계	개선방안
허위신청 (허위출결)	XX자치단체 관내 어린이집에서 재원 중이던 아이가 짧게는 31일에서 길게는 61일까지 국외 체류하여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일수를 허위 보고하여 보육료 1,949,000원을 부당하게 수령	집행	해외 출입국 정보 연계를 통해 해외체류 중인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함
	OO자치단체 소재 A어린이집은 입소하지 않는 아동의 어머니가 맡겨놓은 아이사랑카드로 약 6개월간 보육료 1,648,560원 부당 결제	집행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는 수급자에게 SMS를 통해 알리고, 이상 있을 경우 연락을 받도록 함(만 18세 이하 부모님 통보)
	○○업체 대표는 직원들이 시차출퇴근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근로계약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일가정양립지원금 3,305만 원을 부당 수령	선정	전자 기록 형태의 출퇴근 실적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허위근로 여부 검증 강화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차. 허위신청(기타)

유형	사례	단계	개선방안
허위신청 (기타)	A협의회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 사업의 경우 일반경쟁을 해야 하나, 모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수의 계약 체결. 또한,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용역사업을 세부사업별로 나누어 견적서를 나눔.	집행	동일 업체와 여러 건의 거래가 반복될 경우 거래 내역 확인
	지역연구사업 수행자가 친척과 직원 명의로 지원기업을 설립한 후, 업체선정 및 사업계획 서류를 조작하여 약 1억 5천만원 횡령	선정	가족관계 증명을 통해 가족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실사 정보 확인 필요
	B공공기관 직원으로 일하면서 몰래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사를 차려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부당 취득	선정	보조사업 담당자 및 친인척의 사업선정 검토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제3자가 보조금 수령	선정	보조금을 제3자가 아닌 수급자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구축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속학과 학생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가계곤란 장학금을 지급할 것처럼 한 후 본인이 임의로 개설한 학생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	집행	보조금을 제3자가 아닌 수급자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구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자가 공장 건물면적과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부풀려 작성하는 수법으로 국비와 지방비 수십억원 편취	선정	부동산 정보(사무소 면적, 대지 면적, 소유권자, 근저당권 등) 등 확인을 통해 설치 여부 확인
	XX국제신도시 개발지구 내에 있는 분묘 100여기를 허위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5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브로커, 장묘업자, 사이버유족 및 분묘이전 보상 절차 관련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OO공사 직원 등 41명 인지, 17명 구속 기소, 19명 불구속 기소	선정	보조사업 결과 및 관련 서류 확인 철저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차. 허위신청(기타)

유형	사례	단계	개선방안
허위신청 (기타)	XX자치단체에 사는 A는 관내 O아동센터의 대표자로 있으면서, 월 1,462,000원 상당의 상시 소득이 있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타가면서 부정수급함	선정	선정 대상자 선정 시 국세청 정보를 확인하여 소득 재산을 명확히 파악함
	산업용목재펠릿 보일러 사업에서 지난해 설치한 보일러를 당해연도에 설치한 것으로 보조금 허위 신청하여 수령	집행	국세청 및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정보연계를 통해 집행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차단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개발된 제품의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약 4천만 원 횡령	선정	특허청 특허 등록정보를 연계하여 특허정보를 기준으로 과거 사업내용과 겹치는 부분 검증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중소기업 창업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	선정	창업일 이전 및 이후의 일정기간 거래내역 확인
	쌀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실제로 쌀농사를 지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직불금을 부당 수령	선정	부동산 정보(농지 면적 정보, 소유권자, 근저당권 등), 농장 정보(농작물생산현황) 등 확인을 통해 적정 대상자 여부 확인
	영농법인 산하 3개 직영농장을 운영하는 자가 직영농장의 구제역 돼지 살처분 과정에서 농장일 보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23억 원 상당 편취	선정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가축사육시설 현황을 조회하여 검증
	XX자치단체 어린이집 보육교사 A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처럼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364만원을 부당 수령	선정	휴업급여 신청 시 신청 대상에 대한 경력 및 자격(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득실자격 등을 활용)에 대한 검증 필요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차. 허위신청(기타)

유형	사례	단계	개선방안
허위신청 (기타)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특수용도용 화물차를 일반 화물차로 불법 변경등록하고, 유가보조금을 약 12억 원을 편취	선정	차량 이력정보 확인을 통해 불법 변경정보 확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각 노선별 운행횟수를 임의로 늘려 유가보조금 약3,702만원을 편취	집행	수기가 아닌 전자기록 형태의 차량 운행정보를 점검하여 운행 실적 검증
	A요양병원 운영자가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진료 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을 동원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약 6천만 원 편취	집행	행 검진 기록이 정확한지 검진정보와 비교하여 검증
	난방용 '등유'를 판매한 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유가보조금 2억 4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등 49명 적발, 2명 구속	집행	주유소의 유류 구매 정보와 판매 정보 검증
	○○ 아동발달센터 대표는 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학생들의 보호자로 하여금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하게 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내역을 부풀리거나 허위 결제 하는 방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부당 수령	집행	장애인활동지원사 등록현황 및 활동내역에 대한 세밀한 검증 필요
	농업인 ○○○는 실제로는 인삼재배용으로 농지 4필지를 임대하였음에도, 쌀농업직불금을 신청하여 부당 수령	집행	직불금 대상자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강화하여 실제 농작물 경작 유무 점검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차. 허위신청(기타)

유형	사례	단계	개선방안
허위신청 (기타)	<u>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첫번째 보조사업에서 e-나라도움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고, 두 번째 보조사업에서 동 증빙자료를 pdf 로 변환하여 기타 방식으로 증빙자료를 등록하는 경우 2중 사용</u> 가능성 발생	집행	전자세금계산서 형태가 아닌 기타 방식의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통해 허위 여부 등을 중점 점검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가. 목적외사용

유형	사례	단계	개선방안
목적외사용	A협회에서는 대회가 끝난 같은해 조직위원장 개인 목적으로 운영 중인 회사사무실에 인테리어 및 사무기 설치비 명목으로 4,700,300원 지출	집행	대회 기간 이후 사용 내역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 내용 확인
	○○공단은 매년 4,000건 이상 지원되는 시설자금의 사후관리가 전혀 없어 공장시설 매입 등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음식점 운영, 임대사업 등 용도외 사용되는 사례 발생	집행	용도 외로 사용 할 수 없도록 이체한도제한 및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사용만 허가함
	OO장애인자립센터 소장 D가 OO센터업무와 무관한 정치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종종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각종 집회에 센터직원까지 참석시키고 소요경비는 센터운영비로 처리	집행	보조금 지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사용하도록 함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타. 중요재산 임의처분

유형	사례	단계	개선방안
중요재산 임의처분	A법인에서 보조금이 들어간 수산물직 매장 건물 중 1층 전부와 2층 일부를 <u>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화장품 판매장으로 임대</u> 해준 사실을 발견하고 5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만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사후관리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 추가하여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함
	농업회사법인 dd주) 대표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입한 기계설비 등을 승인관청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판매하여 1억 9,500만 원을 편취	사후관리	소관 중앙관서 및 지자체에서 매년 중요재산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관리 적정성 점검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파. 자부담 대납 및 회피

유형	사례	단계	개선방안
자부담 대납	물품 구입 대금을 대납, 보조금 부정수급: 농협 조합장 등은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면서 업체에게 자부담금을 대납케 함	집행	보조사업 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이체 등 거래내역이 남도록 함
자부담 회피	OO자치단체 지역에서 실시한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과 관련,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총 11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편취	집행	자부담금 선 입금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하. 기타

유형	사례	단계	개선방안
기타 (협회의 부정수급)	산업용목재펠릿 보일러 사업에서 <u>지난해 설치한 보일러를 당해연도에 설치한 것으로 보조금 허위 신청</u> 하여 수령	집행	국세청 및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정보연계를 통해 집행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차단함
	<u>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부당 중복 수행 : OO기금을 활용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과제를 중복 수행</u>	선정	보조사업 신청 및 수급 이력을 조회하여 유사사업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A시 재난지역 선포 후 가구당 보상금 지급 시 아바, 엄마, 아들이 주민번호 등을 통해 신청 및 3종으로 수급	선정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하고 가족별 보조금 신청 이력을 조회하여 중복 신청유무 검증
	연구성과실적 발표 시 <u>성으로 등록한 특허가 한 건도 없는 데도 31건의 다른과제의 연구성과를 연구개발 성과인 것처럼 허위 작성 및 제출</u>	집행	연구 성과로 등록된 특허를 특허청에 실제 등록된 정보(특허명, 특허등록일자, 등록자, 특허내용 등)를 확인하여 검증
	해양플랜트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자가 <u>자신의 처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연구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수법</u> 으로 약 15억 원 횡령	집행	가족관계 증명을 통해 가족간의 거래가 있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이체내역 등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 필요
	A 센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면서 <u>잔액이 발생하자 소방공사를 할 필요와 계획이 없었는데도, 소방견적을 제출 받고 소방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증빙을 만들고 업체에 비용을 이체하고 업체로부터 회수하지 않음</u>	집행	보조금 지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허위 거래를 적발함

2. 보조금 사용 및 기타사항

2-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하. 기타

유형	사례	단계	개선방안
기타 (협회의 부정수급)	협약기한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때에는 연구장비를 구매할 수 없는데도 20일채 남아 않은 시기에 연구장비 구매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 환불	집행	사업 종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 거래내역취소 검증하여 부정수급자 모니터링 실시
	상위보조사업자가 하위보조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차량임차비와 관련하여 하위보조사업자가 특정업체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특정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해 일정 금액을 개인적으로 부당 편취	선정	특정업체가 다수의 하위보조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해 부적정 계약 여부 검증

CONTENTS

2025년 보조금 교육

I 보조금의 이해

1-1.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이해	01
1-2. 국고보조금의 유형	02
1-3. 지방보조금의 유형	04
1-4. 보조사업 진행절차	05
1-5. 보조금 집행 프로세스	06
1-6. 보조금 회계감사 및 정산보고서 검증	07
1-7. 보조금 관리시스템	10
1-8. 정부지원사업의 주요유형	11

II 보조금의 사용 및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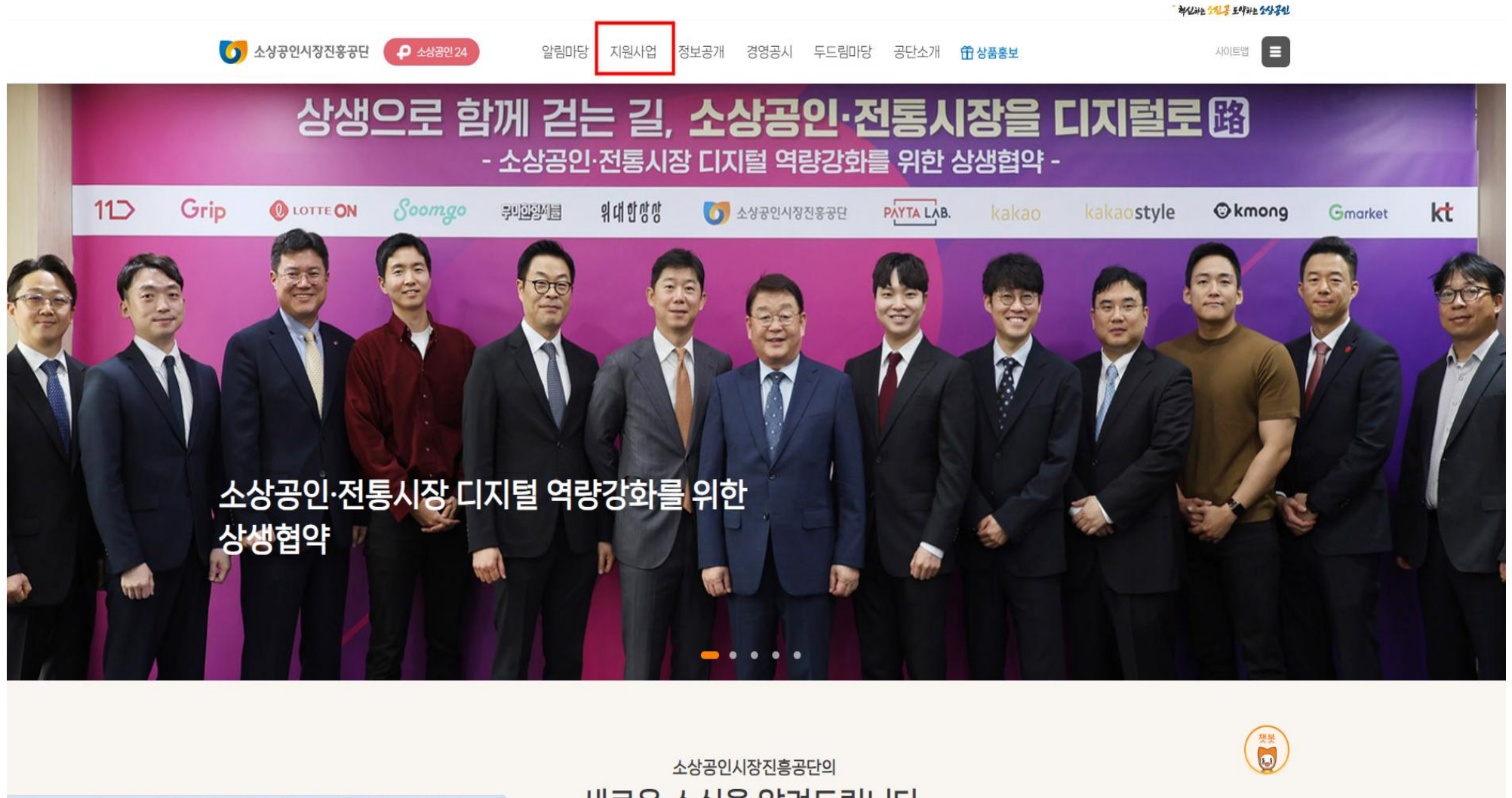
2-1. 인건비	13
2-2. 운영비	15
2-3. 여비	22
2-4.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유형자산	24
2-5. 주요 Check List	25
2-6. 보조금의 회계처리	28
2-7.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29

III 주요 지원사업 및 유의사항

3-1. 주요지원사업(자영업)	50
3-2. 주요 지원사업(제조업(창업))	52
3-3. 주요 지원사업(제조업)	53
3-4. 주요 지원사업(수출)	54
3-5. 주요 지원사업(전업종)	55
3-6. 주요 지원사업(주요 site)	56
3-7. 제안 시 필수 3요소	58
3-8. 지원 시 세부요건	59
3-9. 지원금의 주사용 용도 설정	60

3 · 주요 지원사업 및 유의사항

3-1. 주요지원사업(자영업)



3 · 주요 지원사업 및 유의사항

3-1. 주요 지원사업(자영업)

소상공인마당
자영업 지원 포털

사업정보 성공사례 소식&알림 나의정보

로그인 회원가입 소상공인 24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창업지원

경영성장 재기지원 전통시장 정책자금

창업지원 예비창업 또는 초기창업을 위한 맞춤 지원

상권정보시스템 > 소상공인컨설팅 >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 지식배움터 > 프랜차이즈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꿈과 희망
소상공인마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소상공인 여러분! 이거 보세요오오~!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24로 부터

01 한 곳에서 소상공인24 에서
02 한 번에 신청부터 수혜까지
03 놀림 없이 맞춤형 알함으로
04 간편하고 서류 준비 없이
05 편리하게 방문 없이

2024년 맞이 2,024명에게 쏟아지는
총 1억원+α의 경품!
윈터 ON 누리

소상공인마당의
주요 서비스 바로가기

🔍 🗂️ 🗨️ 📄

3. 주요 지원사업 및 유의사항

3-2. 주요 지원사업(제조업(창업))

중소벤처기업부
STP 창업진흥원
로그인
회원가입
f
b

K-STARTUP
사업소개
사업공고
알림마당
고객센터

K-Startup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공지사항
2024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최종선정자 결과 공지
2024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최종선정 결과 안내

신규 사업 공고
+

- [경남] 예비, 초보창업가를 위한 상세, 랜딩페이지 기획 ...
- 2024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글로벌 R&D) 추천과제 모집
- 포스텍홀딩스 아카데미(POSTECH HOLDINGS ACADEMY) ...
- '24년 창업지원센터(동백) 입주기업 모집 공고
- 2024년 아웃바운드 해외 매장 진출 지원기업(일본 도쿄 ...

마감임박 공고
+

- AI 비즈니스 무료 특강 오늘마감
- 2024 해양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창업... 오늘마감
- 2024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 오늘마감
- 2024년 KIPS 1기 참여기업 모집공고 오늘마감
- [전남] 2024년 IP창업Zone 2기 교육생 모집... 오늘마감

2024년
창업기획자 등록제도 세미나
일시 2024.05.20(월)
장소 신청자 대상 안내

신청하기

1 / 8

사업신청관리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창업예유
창업기획자공시시스템
창조경제혁신센터
메이커울
스타트업라운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화상회의실예약

3. 주요 지원사업 및 유의사항

3-3. 주요 지원사업(제조업)

202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통합공고 안내

'24년 통합공고문 보러 가기

SMTECH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RMS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로그인 회원가입 개인정보정정요청 공공데이터제공 통합로그인

과제신청 과제평가 과제수행 연구비집행 연구비정산 정보마당 고객지원

즐거찾는 서비스

MY 서비스 현황
메뉴 설정하기

과제신청
협약변경관리
연구비 총괄 조회
R&D사업공고
사업소개
질의 및 응답 (Q&A)

SMTECH 사업 공고 보기 IRIS 사업 공고 보기 RMS 사업 공고 보기

공고별 보기 사업별 보기 < > 전체공고 보기

접수중 마감일 2024. 05. 31

2024년 지식산업센터 연계활용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4. 04. 01 ~ 2024. 05. 31

상세보기 신청하기

접수중 마감일 2024. 05. 31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5월 공고

접수기간: 2024. 05. 01 ~ 2024. 05. 31

상세보기 신청하기

접수중 마감일 2024. 05. 31

2024년도 지역산업육성 지방비 평가관리사업 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간: 2024. 05. 01 ~ 2024. 05. 31

상세보기 신청하기

접수중 마감일 2024. 06. 05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확대형-상생협력) 제2차 시행계획 ...

접수기간: 2024. 05. 13 ~ 2024. 06. 05

상세보기 신청하기

접수예정 마감일 2024. 06. 03

(산학연협회)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제2차(하반기) 소부...

접수기간: 2024. 05. 20 ~ 2024. 06. 03

접수예정 마감일 2024. 06. 03

(충남창경센터)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제2차(하반기) 도...

접수기간: 2024. 05. 20 ~ 2024. 06. 03

접수예정 마감일 2024. 06. 03

(KTR)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제2차(하반기) 도약...글...

접수기간: 2024. 05. 20 ~ 2024. 06. 03

접수예정 마감일 2024. 06. 03

(경기창경센터)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제2차(하반기) 도...

접수기간: 2024. 05. 20 ~ 2024. 06. 03

3 · 주요 지원사업 및 유의사항

3-4. 주요 지원사업(수출)



중소기업수출지원포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주요수출지원사업

수출관련서비스

수출상담실

알림마당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는 성공파트너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xport support center

중소기업과 지원정책을 연결하여
중소기업에 힘이 되어 드립니다.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Biz info

공지사항

- [협력재단]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참여기업 상시 모... 2024-05-10
- [중기부] 중기부, 해외구매자(바이어) 수출계약 전과정 밀착 지원한다. 2024-05-07
- [중기부] 2024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2024-03-29
- [중기부] 2024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4-03-29
- [중기부] 2024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지원기업 대상 수출지원기반활용사... 2024-03-29

3. 주요 지원사업 및 유의사항

3-5. 주요 지원사업(전업종)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Biz info

정책정보 활용정보 고객알림 이용안내  기업마당 앱다운로드 → 전체메뉴보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100%

20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

지역별 사업은 "정책정보 > 지원사업 공고" 메뉴 참조

동행 축제 2024
K-SHOPPING FESTA
2024.5.1-5.28

인기 검색어

1 지원사업공고	6 제주
2 창업지원금	7 바우처
3 인건비 지원	8 부산
4 소상공인	9 울산
5 소상공인 정...	10 수출

속보성 대시보드 더보기+

2022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수출 101.6억 달러 ▼8.48%

지원사업공고 행사정보 정책뉴스 입법·행정예고/고시 중소기업 속보성지표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공고 **1096** 건 더보기+

#기타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2024-04-18 ~ 2024-06-28

D-45

#창업

2024년 2차 포텐셜 씨드 (Potential Seed) 경작형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4-05-13 ~ 2024-05-31

D-17

#창업

2024년 창업 인큐베이팅 경진 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

2024-05-13 ~ 2024-06-14

D-31

#기술

2024년 베이링산업 기술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05-10 ~ 2024-05-23

D-9

#창업

2024년 한남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창업아이템 검증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2024-05-10 ~ 2024-05-26

D-12

3 · 주요 지원사업 및 유의사항

3-6. 주요 지원사업(주요 site)

기술정보 진흥원 > 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 <http://www.smtech.go.kr/front/main/main.do>

창업진흥원 > 창업넷

- <http://www.startup.go.kr/main.do>

창조경제타운

- <https://www.creativekorea.or.kr/guid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자영업 지원

- <http://www.semas.or.kr/web/main/index.kmdc>

지원사업 백화점 > 기업마당

- <http://www.bizinfo.go.kr/index.do>

3. 주요 지원사업 및 유의사항

3-6. 주요 지원사업(주요 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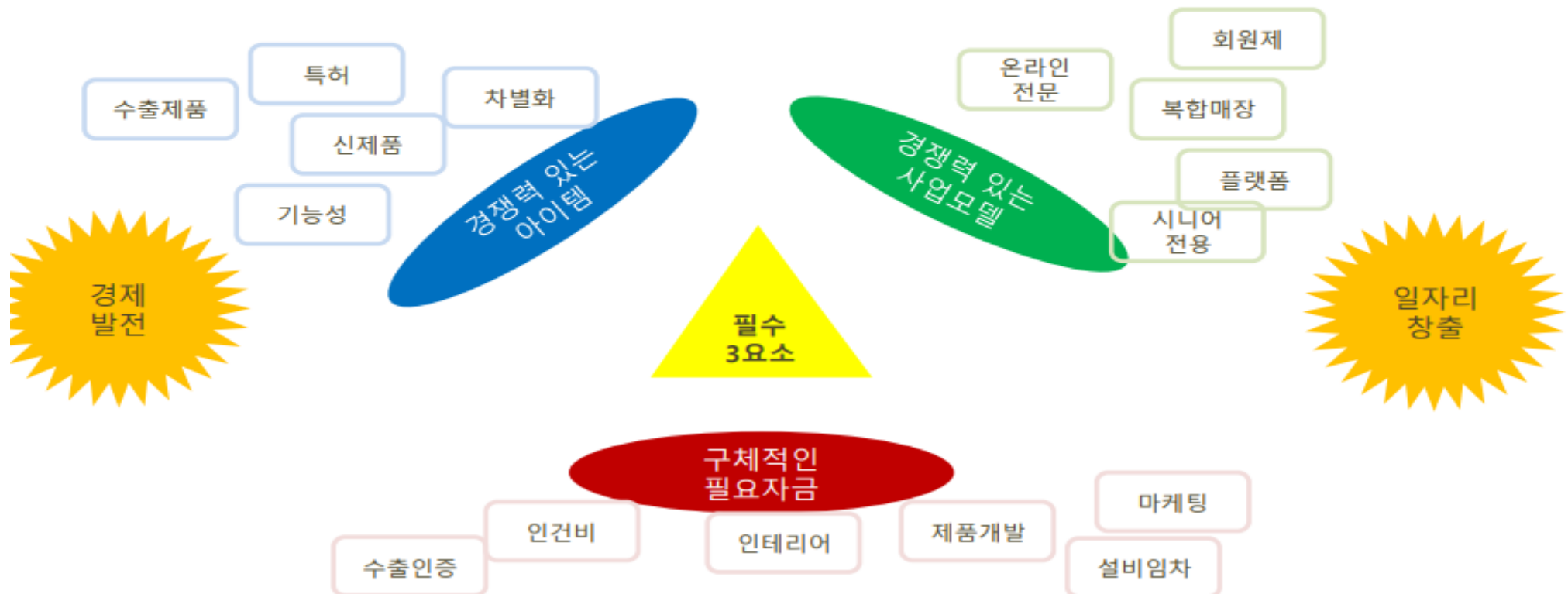
- 정보화 지원 : <http://it.smba.go.kr/portal/ptm/main.do>
- 기술보호 : <https://www.ultari.go.kr/portal/ptm/main.do>
-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여성, 장애인) : <http://www.smpp.go.kr/web/Main.jsp>
-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지원 : <http://www.smbacon.go.kr/>
- 해외규격 인증 지원사업 : 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foreign_auth/guide/guide.jsp
- 수출 인큐베이터 지원사업 : <http://www.sbc-kbdc.com/>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 <http://www.smtech.go.kr/front/sig/st/prjtIntro.do>
- 이노비즈 인증 지원사업 : <http://www.innobiz.net/>
- 메인비즈 인증 지원사업 : http://www.mainbiz.go.kr/usr/pageFwr.do?cd_menu=M010101

3. 주요 지원사업 및 유의사항

3-7. 제안 시 필수 3요소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Government subsidy

경쟁력 있는 아이템 또는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정 부분 또는 전액 지원하여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매출증대, 일자리 창출, 수출증대를 통한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사업



3 · 주요 지원사업 및 유의사항

3-8. 지원 시 세부요건

아이템	사람	필요자금	가점
기존과 다른...	경험	소멸	수출
특허	자격	구체적	일자리

3 · 주요 지원사업 및 유의사항

3-9. 지원금의 주사용 용도 설정



Q&A

[보조금 검증의 전문가]

공인회계사, 송영선

지난 10여 년 간, 수천 건의 보조금 사업 검증과 평가를 수행해 왔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보조금 검증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범부처통합 평가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환경부 등
우리회계법인 출신, 보조금 검증 전문 회계사 그룹 "TEAM 송영선" 대표 전문 공인회계사 총 7인



Homepage(질의응답, 문의, 상담)

www.보조금.com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